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

2005. 8.

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

목 차

Ι.	추진경위1
п.	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문제점2
Ш.	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7
IV.	후속조치 추진계획14

< 참고자료 >

- 1. 부처별 정책연구비 예산 및 집행현황
- 2. 부처별 정책연구관리체계 현황
- 3.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

I. 추진 경위

□ 대	통령님께서	정책연구비의	집행실태를	분석하고	개선방안을	마
런	하여 보고할	것을 지시				
('(05.1.18 정부학	^복 신위의 국책연 ⁻	구소 개선안 5	보고시)		
*	총리님도 개선	<u> </u>	에 보고토록 지	시시('05.2.15	국무회의시)	
	, , _ ,	중심으로 역할분 혁신위·청와다				
□ 관	계기관 및 전	문가 의견 수렴('	05.2.22)			
	, – , - ,	실적조사('05.2' 전문가(광운대		–	설문조사('05.	3월
□ 정	책연구용역:	체계 개선TF*	운영('05.4.10~	~6.17, 6회	개최)	
*	혁신위(주관),	청와대, 기획처,	재경부, 행자부	등으로 구/	성	

- —< 참고 : 정책연구비 개요 >—
- 정책연구비는 '98년 총리실 연구회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출연(연)
 기본사업비 일부를 재원(385억원*)으로 관련부처별로 신설
 - * 인문 30%(30억원), 경제 50%(122억원), 과기계 20%(233억원)
- 정책대안 마련, 각종 조사·분석 등 연구

□ 정부혁신위 본회의 심의('05.7.1)

-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 (예 :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)
- 정책현황의 조사·분석·평가 (예 : 중소도시 교통정책 평가)
- 각계 의견 수렴 (예 : 공무원 단결권 관련 여론조사)
- 정책연구비 집행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」(재경부 예규) 적용

Ⅱ. 정책연구용역의 현황 및 문제점

1. 정책연구비 집행현황

□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 총 613억원 집행 (과제수 1,703건)

(억원, 건)

		<u>'02년</u>	<u>'03년</u>	<u>'04년</u>	<u>계</u>
•	예산	216	212	226	654
•	집행	200	202	211	613
•	과제수행 건수	537	556	610	1,703

□ 부처당 평균 10억원 집행, 30여건 과제 발주

(억원, 건)

		<u>계</u>	<u>산자부</u>	재경부	과기부	통일부	<u>기타</u>
•	'05예산	234	34	30	20	4	146
•	집행액 ^{1」}	204	29	31	31	4	109
•	과제수행 건수 ^{1」}	568	69	73	48	45	332
	1」 '02~'04년간	집행실적	명균치				

□ 용역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기관이 50%이상 차지

	<u>계</u>	<u>출연기관</u>	<u> 대학</u>	<u>학회 · 협회</u>	<u>개인</u>
과제 건수	1,703	867	424	389	23
(비중)	(100%)	(51%)	(25%)	(23%)	(1.4%)

□ 전체과제의 2/3이상이 용역비 3천만원 이하

 계
 1천만원 이하
 1~3천만원
 3천만~1억원
 1억원 이상

 • 과제 건수
 1,703
 203
 963
 491
 46

 (비중)
 (100%)
 (12%)
 (57%)
 (29%)
 (2.7%)

2. 문제점

【 종합관리체제 】

- □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 취약
 - ㅇ 정책연구용역의 수행 절차에 관한 정부내 통일된 관리규정 부재
 - 일부 부처는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 상이하며 상당 수 부처는 자체 규정도 미비
 - 정부내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점검·관리하는 기능이 취약
 - 개별 부처내에서도 정책연구에 대한 기획 · 관리기능 미흡 ※ 일부 부처는 과제선정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· 운영

선정위원회 운영	모든 과제	대부분 과제	일부 과제	미운영
비 율	23%	28%	13%	36%

- ㅇ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정부차원의 정보관리체제 부재
 - 개별 부처도 과제명· 연구자·용역비 등 주요목록만 관리

【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단계 】

- □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·투명성 부족
 - ㅇ 연구과제 선정은 부처 내부 위원회 또는 주무부서에서 결정
 - 4개 부처만 외부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를 제한적으로 운영

과제선정 외부부탁	있음	없음	기타	
비율	33%	55%	12%	부탁반영정도 : 53%

- ㅇ 선행 연구에 관한 조사 및 중복・유사 과제 사전 점검기능 미흡
- ㅇ 연구자 선정은 주로 과제담당 부서에서 결정
 - 공모 또는 인력 DB를 통한 최적 연구자 발굴노력 부족

외부전문가 인력DB 운영	운영	미운영 및 기타
비율	35%	65%

※ 전체 과제의 82%가 발주기관이 연구자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식

【 용역발주 및 중간관리단계 】

□ 용역방식 및 용역비 지급기준이 획일적

-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목적, 용역비 규모, 용역기간 등 과제의 특성에 무관하게 종합보고서 제출형식 채택
 - 구두자문, 공동작업, 원고 제출 등 다양한 용역방식을 감안한 관 리규정 부재와 경직적 용역관행에 기인

현행 용역방식 개선방법	공동작업	구두자문	아이디어 용역	기타
비율	48%	38%	7%	5%

- 용역수행기관의 특성 및 과제 참여율 등에 관계없이 용역비(인 건비)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
 - 연구인력 과다 계상 등 편법집행을 조장
 - ※ 인건비 기준(월)은 책임연구원 194만원, 연구원 123만원, 연구보조원 85만원, 보조원 55만원 (근거: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」)

□ 용역 발주 후 중간점검·관리 기능이 대체로 미약

- 상당수 과제는 용역기간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연구결과의 부실 초래
 - 용역기간 종료시점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주 요인 ※ 실태조사결과 중간점검을 시행하는 비율이 22%에 불과
- 용역 발주 공무원은 업무부담 과중,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회피 등을 이유로 용역수행과정 참여에 소극적

연구자와의 정기적 회의 운영	운영	미운영
비율	67%	33%

□ 용역비 정산의 복잡성

- 일부 부처는 법적 근거없이 모든 용역비에 대해 영수증 첨부 등 정산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연구자의 정산부담 과중
 - ※ 현행 규정상 선금에 대해서만 정산 (재경부예규 : 선금지급요령)

【 결과평가 및 활용단계 】

□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기능 미흡

- 공정성·투명성을 갖춘 평가체계가 취약하며, 일반적으로 과제 담 당부서 내부절차로 종결처리
 - 일부 부처는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 반영시스템은 취약

과제평가위원회 운영	미운영	일부운영	대부분 운영	모두 운영
운영 비율	37%	33%	18%	12%

※ 과제평가위원회 구성: 공무원 43%, 외부전문가 7%, 공무원·외부 전문가 혼합: 50%

□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도 저조

- 연구결과를 정책대안 발굴 등에 직접 활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정 책에 단순 참고하는 수준
 - 부적절한 과제·연구자 선정, 중간관리 소홀, 평가기능 취약 등에 기인

< '02-'04년간 연구결과 활용유형 >

계	정책대안 발굴	정책 참고	조사분석	통계/DB
1,703건	105건	1,399건	150건	49건
(100%)	(6%)	(82%)	(9%)	(3%)

□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의 외부 공개 미흡

- ㅇ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
- ※ ○○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의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종합목록관리제도가 없어 연구기관, 중앙부처, 일반인 등 활용 미흡(감사원 지적사항: '92년)

Ⅲ.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

<	개	섥	목	丑	>
_	- / II	111	\neg	ᅭ	

□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



① 종합관리체제 정비

- ① 정책연구관리규정(총리훈령) 제정 ②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・운영
- ③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

② 과제·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자 저변 확대

① 과제 및 연구자 선정절차 개선 ② 전문가 DB 구축·활용

③ 용역방식 및 용역비 기준의 합리화

- ① 활용목적 · 연구특성에 따라 용역방식 다양화
- ② 용역비 지급기준 현실화

④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평가 강화

- ① 용역수행 중간점검 의무화 ② 실효성있는 평가체제 구축
- ⑤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
 - ①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② 연구의 성과관리 강화
- ※ 개선방안을 '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후속조치 완료

1. 종합관리체제 정비

1-1 정책연구관리규정(총리훈령) 제정

- □ 정책연구관련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는 규정 제정
 - 과제 및 연구자 선정,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, 종합 DB관리, 심 의 및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1-2 부처별로「정책연구심의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

- □ 구성 : 위원장(정책홍보관리실장), 관련 국·과장, 외부전문가 등 ○ 전체위원중 일정비율이상(20-50%)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
- □ 기능 :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 및 중요사항 결정
 -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
 - 연구과제 중복여부 사전 점검 및 성과목표 제시
 - 과제별 평가위원 선임 및 연구결과 평가
 -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

1-3 「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」을 구축・운영

- □ 모든 부처의 연구용역내용을 종합관리
 - o 현행「대한민국전자정부」(<u>www.egov.go.kr</u>) 등에「정책연구용역」 창을 개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,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
 - ㅇ 각 부처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연구내용 관리
- □ 완료과제, 진행과제, 발주예정 과제로 구분하여 자료 게재
 - ㅇ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자료도 소급하여 입력

2. 과제 ·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자 저변 확대

2-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절차 개선

- □ 부처별로 구성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심의 및 중복연구 여부 점검
 - ㅇ 3,000만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연구자 선정

* 공모계획 공고 → 응모 → 응모자 심사(최적의 연구자 선별)

※ 용역방식에 따라 선정절차 조정

2-2 전문가 DB 구축·활용

- □ 업무분야별로 전문가 DB를 구축하고, 「종합정보관리시스템」과 연계 하여 관리
 -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, 민간연구소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도 포함
 - ㅇ 전문가에 대한 주요경력, 전문분야, 용역수주실적 등 게재
- □ 연구자 및 평가위원 선정시 전문가 DB를 최대한 활용

3. 용역방식 및 용역비 기준의 합리화

3-1 활용목적 및 연구특성에 따라 용역방식을 다양화

- □ 보고서 제출형 용역(현행 방식)
 - ㅇ 중장기 과제 : 현행과 같이 종합보고서 작성
 - ㅇ 단기 과제 : 약식의 분석보고서 작성
- □ 의견수렴형 용역
 - ① 정책 현안에 대하여 지정된 전문가가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
 - ② 정책현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모
 - 공모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수렴
- □ 공동작업형 용역
 - 일정기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조사·분석, 정책대안 마련 등 공 동작업 수행
 - 공무원의 현실감과 연구자의 전문성 조화

3-2 용역비 지급기준 등 현실화

- □ 용역비중 인건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
 - 연구자의 보수수준을 토대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고, 연구자의 경 력 · 연구실적 · 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
 - 구체적 기준은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」에 명시
- □ 용역방식 다양화에 따른 용역비 지급방식 개선
 - ㅇ 보고서제출형 : 현행 용역비 지급방식 적용
 - ㅇ 의견수렴형 : 원고료 및 평가등급별 차등 지급
 - ㅇ 공동작업형 : 인건비 위주 지급
- □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역비의 일정비율을 평 가비로 인정
- □ 용역비 정산대상의 명확화 및 정산방법의 간소화
 - ㅇ 정산 대상 : 선금 지급액에 한정(선금지급요령 제5조)
 - 정산 방법: 사용내역서 제출(중요사항은 증빙서류 첨부)
 - ※ 선금정산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과 같이 계약목적 달성에 합당한 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

4.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평가 강화

4-1 용역수행 중간점검 의무화

- □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협의 확대 및 중감점검 의무화
 - ㅇ 용역계약서에 공무원과의 협의 및 중간점검일정 명시

4-2 실효성있는 평가체제 구축

- □ 과제별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
 - 평가위원은 중간점검과정에 참여하여 보완사항 등 검토의견을 연 구자에게 제시하고. 최종 평가결과는 위원회에 제출
 - ㅇ 평가는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실시
- □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,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용역결과보고서에 명시(용역실명제)

5.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

5-1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

- □ 모든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
 - 공개대상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상 비공개대상 정보*를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용역 결과
 - * 법령상 비밀정보, 국방·통일·외교·안보 정보, 사생활 침해 정보 등
 - ㅇ 공개방법 : 부처 홈페이지에 '정책연구용역'창을 개설하여 등재
 - ㅇ 공개시기 : 용역 종료후 6개월 이내
- □ 연구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여부를 점검하여 「정책연구심의위원회」에 보고
 - 위원회 보고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「종합정보관리시스템」에 등재

5-2 연구 성과관리 강화

- □ 재정사업 성과관리 차원에서 매년 부처별로 용역절차·결과 및 활용상황을 점검
 - 문제발견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감사원 등에 통보

Ⅳ. 후속조치 추진계획

본 개선방안이 '0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금년내 완료

□ 관련규정 정비

- 「정책연구관리규정」(총리훈령) 제정 : 행자부, '05.12월
-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」(재경부 예규) 개정 : 재경부, '05.12월
- ㅇ 「정책연구용역 업무매뉴얼」 작성: 행자부, '05.12월

□ 정보관리체제 구축

- ㅇ 「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」 구축 : 행자부, '05.12월
- 개별 부처 홈페이지에「정책연구용역」창 개설 및 최근 5년간 정책연구 초록내용 입력: 각 부처, '05.12월

【참고 1】 부처별 정책연구비 예산 및 집행현황

(억원)

H = I nd	200)2	2003		2004		2005
부 처 명	예산	집행	예산	집행	예산	집행	예산
재정경제부	29	24	29	26	45	43	30
외교통상부	6	5	6	3	6	6	6
기획예산처	4	4	4	4	4	3	6
공정거래위	1	1	1	1	1	1	2
농 림 부	9	9	9	9	9	8	15
산업자원부	32	30	30	26	35	32	34
보건복지부	12	11	12	10	14	13	16
노 동 부	10	10	10	10	10	10	12
건설교통부	17	15	23	26	23	22	23
철 도 청	1	1	1	1	1	Ī	_
해양수산부	6	6	6	5	6	5	6
해양경찰청	_	_	1	1	1	1	1
환 경 부	9	9	9	8	10	10	10
통 일 부	4	4	4	4	4	4	4
법 무 부	2	2	2	1	2	2	2
행정자치부	2	2	3	2	3	3	3
교 육 부	13	12	13	12	13	12	25
문화관광부	1	1	1	1	1	1	1
법 제 처	3	3	3	3	2	2	2
여 성 부	3	3	3	3	5	5	5
과학기술부	43	39	33	37	20	17	20
국 방 부	9	9	9	9	9	9	9
식 약 청					2	2	2
과기부(기초)	(34)	(34)	(34)	(34)	(44)	(44)	(44)
과기부(산업)	(36)	(36)	(36)	(36)	(46)	(46)	(46)
과기부(공공)	(46)	(46)	(46)	(46)	(56)	(56)	(56)
합계(괄호 포함)	216 (332)	200 (316)	212 (328)	202 (318)	226 (372)	211 (357)	234 (380)

()내 숫자는 명칭만 정책연구비이고 내용은 과학기술연구개발비

【참고 2】 부처별 정책연구관리체계 현황

부	_) -111	위원회 운영현황			-ll -l	자료공개	
처	자체규정	위원회명칭	민간위원 인원	'04년 개최	자료관리	(전체과제중 공개 비율)	
과기부	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 (훈령), 정책연구평가 지침(내부)	정책연구심의회 (과제선정 및 평가)	6명	4회	·목록 종합관리 ·결과: 부서별관리	관련기관배포	
교육부	정책연구메뉴얼 (내부)	정책과제심의회 (과제선정)	4명	5회	·목록 및 결과 전산관리 (종합교육자료실)	홈페이지(90%) 관련기관배포 KISTEP등재	
건교부	-	-	-	_	·목록: 종합관리 ·결과: 부서별관리	홈페이지(100%) 관련기관배포 KISTEP등재	
산자부	-	-	-	_	n	홈페이지(50%)	
재경부	-	-	_	_	•부서별관리	홈페이지(10%)	
국방부	정책연구관리규정 (훈령)	과제종합심의회 (과제선정, 평가)	1명	2회	·목록: 종합관리 ·결과: 부서별관리	관련기관배포	
여성부	용역사업처리규정 (훈령)	정책용역심의회 (과제선정, 평가)	-	1회	·전산 관리 (홈페이지)	홈페이지(90%)	
외교부	_	_	-	_	•목록: 종합관리 •결과: 부서별관리		
통일부	용역관리규정 (훈령)	-	_	_	•전산 관리	-	
해경청	행정정보공개규칙 (훈령)	-	-	_	·전산 관리	홈페이지(60%)	

부		위원회 운영현황				자료공개
처	자체규정	위원회명칭	민간위원 인원	'04년 개최	자료관리	(전체과제중 공개 비율)
행자부	-	정책연구타당성 심의회(과제선정)	-	-	•전산 관리	홈페이지(60%)
환경부	환경연구심의회규정 (훈령)	환경연구심의위원회 (과제선정)	3명	1회	·목록: 종합관리 ·결과: 부서별관리	관련기관배포
공정위	행정정보공개지침 (훈령)	정책연구심의회 (과제선정)	-	3회	n	-
농림부	정책연구관리지침 (내부규정)	정책연구심의회	-	2회	•전산관리	홈페이지(80%)
복지부	예산집행심의회규정 (훈령)	예산집행심의회	10명	4회	·목록: 종합관리 ·결과: 부서별관리	KISTEP등재
식약청	정책연구처리규정 (훈령)	예산집행심의회	-	_	·책자관리	관련기관배포
법무부	_	-	_	_	·목록: 종합관리 ·결과: 부서별관리	관련기관배포
기획 예산처	예산집행심의회규정 (훈령)	예산집행심의회	-	2회	n	홈페이지(50%)
노동부	연구사업에관한규정 (훈령)	연구과제선정위원회	-	2회	"	홈페이지(70%)
문광부	예산집행심의회규정 (훈령)	예산집행심의회	-	1회	n	홈페이지(50%)
해수부	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관한규정(훈령)	예산집행심의회	_	2회	n	홈페이지(80%)
법제처	-	연구과제선정위원회	-	2회	"	홈페이지(90%)

【참고 3】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(요약)

'05.3.23 ~ 25일, 21개 부처 정책연구용역 담당공무원(219명중 91명 응답)

- 1. 정책연구과제의 수요조사 대상은?
 - ① 내부 직원(29%) ② 부처 자문위원(1%) ③ 외부 전문가(11%) 내부직원・외부전문가(48%) ⑤ 부처의 고위층 지시 (11%)

(4)

- 2. 정책연구과제 기획 시점은?
 - ① 연초(46%) ② 연중 정기적(11%) ③ 수시로(40%) ④ 기타(3%)
- 3. 정책연구과제 기획시 특정과제가 선정되도록 외부로부터 부탁받은 적이 있는지?
 - ① 있다(33%) ② 없다(55%) ③ 모르겠다(12%)
- 4.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외부로부터의 과제선정 부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?
 - ① 전혀 반영하지 않음(3%) ② 반영하지 않는 편(43%) ③ 반영하는 편(53%)
- 5.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지?
 - ① 모든 과제에 운영(23%) ② 대부분의 과제에 운영(28%) ③ 일부 과제에 운영(13%) ④ 미운영(36%)
- 6.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위원의 주요 구성원은?
 - ① 공무원(44%) ② 외부 전문가(9%) ③ 공무원·외부전문가 혼합(47%)
- 7.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선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?
 - ① 연구자 지명도(21%) ② 자기부처의 과제 수행경험(42%) ③ 연구계획서 우수성(32%)
 - ④ 과제 수요조사시 과제청탁한 연구자(4%) ⑤ 부처의 고위층 지시(1%)
- 8. 정책연구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연구자 선정결과에 만족하는지?
 - ① 불만족(1%) ② 대체로 불만족(11%) ③ 그저 그렇다(34%) ④ 만족(54%)
- 9. 정책연구,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시 선정방법은?
 - ① 동료 및 상관의 추천(57%) ② 소관 연구기관의 추천(15%)
 - ③ 유관기관 및 학회 등에 문의(23%) ④ 인력D/B 활용(5%)
- 10. 정책자문 및 연구결과평가 관련 외부전문가 인력DB를 운영하는지?
 - ① 운영(35%) ② 미운영(32%) ③ 모르겠다(33%)

- 11. 현행 연구용역방식보다 더 좋은 용역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?
 - ① 그렇다(34%) ② 아니다(25%) ③ 모르겠다(41%)
- 12. 만약 '그렇다'면, 다음중 어떤 용역방식이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?
 - ① 아이디어 용역(7%) ② 일정기간 자문(38%) ③ 공동 작업(48%) ④ 기타(7%)
- 13.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내용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했는지?
 - ① 비공개(7%) ② 비공개된 편(10%) ③ 공개된 편(41%) ④ 공개(43%)
- 14.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회를 운영했는지?
 - ① 모든 연구결과에 운영(12%) ②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운영(18%)
 - ③ 일부 연구결과에 운영(33%) ④ 미운영(37%)
- 15. 과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위원의 주요 구성원은?
 - ① 공무원(43%) ② 외부 전문가(7%) ③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혼합(50%)
- 16.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했는지?
 - ① 미실시(7%) ② 대체로 미실시(14%) ③ 대체로 실시(57%) ④ 실시(22%)
- 17.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연구에 반영되었는지?
 - ① 미반영(3%) ② 반영되지 않은 편(9%) ③ 대체로 반영(78%) ④ 반영(11%)
- 18.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간중에 정기적으로 연구자와의 회의를 하는지?
 - ① 그렇다(67%) ② 아니다(33%)
- 19.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제도화하고 있는지?
 - 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(15%) ② 제도화되어 있으나 운영하지 않음(6%)
 - ③ 주로 서면보고로 대체(44%) ④ 주로 평가회를 개최(36%)
- 20. 평가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?
 - ① 인센티브 없음(49%) ② 자문위원 등 위촉(14%) ③ 추후 연구과제 선정시 우대(35%)
- 21. 불량연구자와 우수연구자를 판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?
 - ① 있다(15%) ② 없다(50%) ③ 모르겠다(35%)
- 22. 정책연구결과가 담당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?
 -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(17%) ② 도움이 된 편(74%) ③ 매우 도움이 됨(10%)
- 23.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?
 - ① 연구결과 부실(86%) ② 기타(14%)